

주요판결

[하급심]대리기사가 도로 가운데 세워둔 차를 운전하면 음주운전?



■ 사안의 개요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먹은 송모씨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방향이 비슷한 친구들을 데려다주기 위해 여러 경로를 거쳐 집에 갈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김씨와 대리운전 기사는 차량 운행 중 운행경로 문제로 다투었고, 대리운전기사는 왕복 6차로 중간에 차를 세운 뒤 운행을 정지했다. 화가 난 송씨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했지만, 사고를 우려해 차를 이동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리기사는 경찰에게 손님이 차키를 빼앗아 도로 가운데에 있다고 신고했고, 송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59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도로변으로 이동시켰다. 이를 본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

■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송씨 스스로 차의 시동을 끄고 기사에게 하차를 요구해 위난을 자초했으므로 긴급피난이 될 수 없다면 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 주요판결

그런데 2심 법원은 "대리기사가 정차한 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이고, 교차로 직전이라 계속 정차하고 있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고, 송씨가 도로변으로 운전한 것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법익이 음주운전 금지로 인하여 얻어지는 법익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대리운전기사에게 내리라고 했을 때 이미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량을 세워두어 위난이 이비 발생하여 송씨의 하차요구로 위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평가

음주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이 보호하는 법익과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법익의 충돌에서 어느 법익을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별적인 사안마다 범죄의 성립을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이다. 운전자의 음주의 정도,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과 위험성, 다른 피난 방법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야간에 도로 가운데에 차량이 정차했을 경우에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면 긴급피난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대리운전기사가 이미 차량을 정지한 상태에서 운전을 거부하고 있다면 위난이 발생한 것이고, 그 이후에 긴급피난자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했더라도 대리운전기사가 더 이상 운전할 의사가 없거나 긴급피난자와 차량 운행문제로 다투면서 정차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긴급피난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